##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: 황산제일철 (Ferrous Sulfate Monohydrate)

나. 일반적 특성:

-화학물질군: 무기염류

-황산제일철 자체는 무취, 흡수성이 있는 회백색 분말로 물에 녹음

다. 유해성 분류: 자극성물질

라. 제품의 용도: 사료첨가제 (동물약품)

마. 제조자 정보

-업체명: (주)동우T M C

-주소: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554-5

-전화번호: 055.323-3663

바. 공급자/유통업자 정보: 제조자 정보와 동일

사. 작성부서 및 이름: 관리부 김석현

아. 작성일자: 1999. 5. 24.

자.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: 1회 2001. 1

## 2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 학 물 질 명	이 명 (異名)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*	함 유 량 (%)
Ferrous Sulfate		7782-63-0 NO8510000	30

\*식별번호: RTECS (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) 번호

# 3. 위험. 유해성

가. 긴급한 위험. 유해성정보

-분진을 흡입하지 말 것

-위험성지수

CERCLA 지수(0-3): 보건=3. 화재=0. 반응성=0.지속성=3

NFPA 지수(0-4): 보건=3, 화재=0, 반응성=0

나. 눈에 대한 영향

-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
- 다. 피부에 관한 영향
- -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- 라. 흡입시의 영향
- -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- 마. 섭취시의 영향
- -삼키면 위험함
- -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
- -부가적인 효과로는 금속맛, 눈과 피부의 황색화, 구토, 소화장애, 요불능, 호흡곤란,

저혈압, 불규칙적인 심장박동, 졸음, 피부색의 청색화, 폐출혈, 간장손상, 경련,

쇼크와 혼수상태를 일으킬 수 있음

- 바. 만성징후와 증상
- -피부접촉
- ●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
- -눈접촉
- ●효과는 노출정도와 농도에 따라 다름
- ●부식적인 물질과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은 급성노출과 같은 효과나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음

## 4. 응급조치 요령

- 가. 눈에 들어갔을 때:
- -아래위 눈꺼풀을 들어올린 채 화학물질이 완전히 남아있지 않을 때 까지 즉시 다량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씻어낼 것

(최소한 15-20분간 실행한다.)

- -pH 가 중성으로 될 때까지 중성 식염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세척할 것 (30-60분간)
- -중성의 붕대로 감쌀 것
- -즉시, 의사의 처치를 받을 것
-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:
- -오염된 의복과 신을 즉시 벗길 것
- -영향을 받은 부위를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화합물질이 완전히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씻어낼 것 (약 15-20분)
- -즉시, 의사의 처치를 받을 것

#### 다. 흡입했을 때:

- -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
- -만약, 필요하다면 구조호흡을 실시할 것
- -환자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할 것
- -증상에 대한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
- -즉시, 의사의 처치를 받을 것

#### 라. 먹었을 때:

- -환자가 쇼크나 혼수상태일 때, 구토를 일으킨다면 토로시럽을 가지고 구토를 시킬 것
- -1L의 물에 2g의 중탄산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으면, 20mg/L의 디프록스아민을 사용하여 위 세척을 할 것
- -복부에 5%의 중탄산나트륨 50ml가 있으면 10g의 디프록스아민을 남겨둘 것
- -환기, 혈압과 호흡을 유지시킬 것
- -증상에 대한 지지요법을 실시할 것
- -즉시 의학적인 조치를 취할 것
- 마. 의사의 주의 사항
- -해독제: 디프록스아민
- 다음 해독제는 추천을 받은 것임
- 독성의 정도에 따른 결정은 해독제에 대한 투약을 따르고 실제 약은 유자격 의료인에 의해서 만들 것

#### (염화철독성)

- .디프록스아민을 12시간 간격으로 최대 80mg/kg (시간당 15mg/kg)을 연속적으로 정맥내 주입할 것
- .디프록스아민의 투약 동안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압이 떨어진다면 투여율을 감소할 것
- .일회 투여량은 1g을 초과해서는 안되며, 최대로 24시간내에 6g을 초과해서는 안됨 .디프록스아민은 심한 신장장애나, 무뇨증, 투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위험함 .투입된 디프록스아민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으며, 심한 독성과 반응할 수도 있음
- .환자가 증상으로부터 나을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디프록스아민 치료를 계속할 것
- .해독제는 유자격 의료인에게 의해서만 투여되야 함

#### 5. 폭발. 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인화점: 자료없음

- 나. 자연발화점: 상온에서 자연 발화되지 않음
- 다. 최저인화한계치/ 최고인화한계치: 자료없음
- 라. 소방법에 의한 분류 및 규제내용: 자료없음
- 마. 소화제:
- -분말소화제, 이산화탄소, 물분무 또는 정규포말을 사용할 것
- -대형 화재시는 물분무, 안개 또는 정규포말을 사용할 것
- 바. 소화방법 및 장비:
- -소화방법
- ●위험이 없게 할 수 있으면 화재지역으로부터 용기를 옮길 것
- ●소화가 될 때까지 불꽃에 노출된 용기의 측면에 찬물을 뿌릴 것
- ●사후처리를 위해 방화수 둔덕을 쌓을 것
- ●불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약품을 사용할 것
- ●유해한 증기의 흡입을 피하고, 환기를 시킬 것
- -소화장비:
- ●화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소화장비를 사용할 것
- ●소화시 호흡장비, 보호의를 착용할 것
- 사.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: 열분해 생성은 유독한 황산화물을 발생시킬 수 있음
- 아.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재: 자료없음

#### 6. 누출사고시 대처방법

-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:
- -유출지역을 깨끗이 일소하고, 사후처리나 재활용을 위하여 용기를 건조시킬 것
- -불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시킬 것
-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:
- -하수구로 씻어내리지 말 것
- -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.도 (환경지도과)에 신고할 것다. 정화 또는 제거방법:

#### (수중유출)

- -유출된 물질을 통풍 시킬 것
- -농업용 석회, 소석회, 석회석암, 중탄산나트륨을 가지고 중화시킬 것
- -화학용 밀가루를 사용하고 오염되거나 침전된 추출물 덩어리를 옮길 것 (토양유출)

- -오염된 물질을 수용 할 수 있는 구멍, 연못, 석호를 파고, 토양방벽, 모래주머니, 발포된 폴리오레틴 또는 시멘트를 가지고 둔덕을 쌓을 것
- -시멘트 가루나 플라이애쉬를 가지고 액체 덩어리를 흡입 할 것
- -소석회, 중탄산나트륨, 부서진 석회석을 가지고 유출물을 중화시킬 것

# 7. 취급 및 저장방법

- 가. 안전취급요령:
- -작업자는 당해 화학제품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
- -취급시 눈, 피부, 의복과의 접촉을 피할 것
- -혼합위험 물질과는 격리하여 저장시킬 것
- 나. 보관방법:
- -환기가 잘되는 건냉소에 보관할 것
- -누출된 물질은 즉시 제거시킬 것
- -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둘 것

##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- 가. 공학적 관리방법:
- -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 또는 공정밀폐 배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. 호흡기보호:
- -통풍장치를 사용하고 허가된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
- -특수호흡용 보호구는 작업장의 오염수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고,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됨
- ●분진과 미스트를 위한 모든 호흡용 보호구
- ●고효율미립자 필터를 장치한 모든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
- ●분진과 미스트 필터를 장치한 모든 강력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
- ●고효율미립자 필터를 장치한 모든 강력 공기정화 호흡용 보호구
- ●흡배기저항이나 다른 양압 또는 모든 연속 유입모드로 작동하는 C형 공기 주입식 호흡용 보호구
- ●모든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
- -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
- ●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 보호구로서 압력요구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것
- ●압력요구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보조적으로 장착한

압력요구나 기타 양압으로 작동되는 모든 전면 공기식 호흡용 보호구

## 다. 눈보호:

- -눈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말보호 또는 분진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할 것
- -눈이 노출될 가능성 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비상시를 위하여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 및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

## 라. 손보호:

- -적절한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
- -취급 후에는 손을 씻을 것
- 마. 신체보호:
- -장기적이거나 연속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침투성 보호의 같은 적절한 장비를 착용할 것
- -요염 된 옷은 즉시 벗길 것
- -취급 후에는 손, 눈을 씻고 양치질을 할 것
- 바. 위생상 주의사항:
- -작업장에서는 음식물 등을 먹거나 마시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 것

### 사. 노출기준

화 학 물 질 명	산업안전보건법				ACGIH			
	TWA		STEL		TWA		STEL	
	ppm	mg/m³	ppm	mg/m³	ppm	mg/m³	ppm	mg/m³
Ferrous sulfate	_	_	_	_	_	1	_	_

#### 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: 흡수성이 있는 회백색의 분말

나. 냄새: 무취

다. pH: 3.7 (5%용액)

라. 용해도: 15.65% (20℃)

용해도(용제): 흡수 메탄올에 용해, 에탄올에 불용

마. 끓는점/끓는점 범위: 자료없음

바. 녹는점/녹는점 범위: 분해함

사. 폭발성: 폭발성물질 아님 (노동부고시 제96-12호 별표 1의 분류기준)

아. 산화성: 산화성물질 아님 (노동부고시 제96-12호 별표 1의 분류기준)

자. 증기압: 자료없음

차. 비중:1.898

카. 분배계수: 자료없음타. 증기밀도: 해당없음

파. 점도: 해당없음 하. 분자량: 169.85 \*분자식: FeSO4.H20

# 10. 안전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:
- -상온 및 상압에서 안정하며 정상적인 저장 또는 취급시 안정함
- -연소할 수 있으나 쉽게 인화되지 않음
- 나.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:
- (피해야할 조건)
- -대기중에서 분진의 분산을 막을 것
- (피해야할 물질)
- -염기: 피할 것
- -삼산화비소+질산염나트룸: 자발적인 가연성 혼합물
- -탄산염: 피할 것
- -금연: 피할 것
- -아세테이트납: 피할 것
- -석회수: 피할 것
- -이소시안아세테이트 에틸: 25℃에서 폭발적으로 분해함
- -산화물: 화재 폭발 위험이 있음
- -요오드화포타슘: 피할 것
- -타타르산염포타슘: 피할 것
- -붕산염나트륨: 피할 것
- -타타르산염나트륨: 피할 것
- 다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:
- -열분해시 유독한 황산화물을 발생할 수 있음
- -상온, 상압하에서 위험한 중합반응은 보고된바 없음
- 라.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:
- -열분해산물은 유독한 황산화물을 발생할 수 있음

- ●희생자가 살아난다면, 지방조직 쇠퇴와 중앙 신경에 미세한 섬유조직 변화를 가진 간경변, 전정과 관장의 폐색, 유분 때문에 늦은 합병증이 소화후 2-5주동안 일어날 수 있음
- ●췌장, 림프마디, 심장의 악화가 일어날 수 있음
- ●일반인의 철 복용량은 체중 1kg당 200-250mg 임

-눈접촉: 자극제, 부식제

●용해작용 때문에 눈과의 접촉은 심한 자극과 부식적인 작용을 일으킴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수생 및 생태독성: 자료없음

나. 토양이동성: 자료없음

다. 잔류성 및 분해성: 자료없음

라. 동물내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: 자료없음

#### 13. 폐기시의 주의사항

가.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:

-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 (별표1) 중 제7호 내지 제14호 및 제17호에 의하여 광재.분진.폐주물사.폐사.폐내화물.도자기편류.소작잔재물.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.폐촉매.폐흡착재.폐흡수재.오니에 함유된 수산화나트륨 (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용출시험결과 용출액 1리터 당 1밀리그램 이상의 수산화나트륨을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)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됨

- 나. 폐기방법:
- -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함
- -관리형 매립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.합성고분자화합물 등으로 고형화처리 할 것 다만, 분진을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포대 등에 담아 처리할 것
- 다. 폐기시 주의사항:
- -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

## 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- 가.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: 해당없음
- 나. 운송시의 주의사항

#### 11. 독성에 관한 정보

- 가. 급성경구 독성:
- -319mg/kg (LD<sub>50</sub>, rat)
- -680mg/kg (LD<sub>50</sub>, mouse)
- -1200mg/kg (LD<sub>50</sub>, guniea pig)
- 나. 급성흡입 독성: 자료없음
- 다. 아급성 독성: 자료없음
- 라. 만성 독성: 자료없음
- 마. 변이성 영향: 자료없음
- 바. 차세대 영향 (생식독성): 동물에서 차세대 영향이 보고됨
- 사. 발암성 영향:
- -산업안전보건법, NTP, IARC, OSHA 발암성물질로 리스트되어 있지 않음
- 아. 기타 특이사항: 급성노출의 경우임
- -흡입: 자극제
- ●호흡장애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- -피부접촉: 자극제
- -피부접촉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- -섭취
- ●염화철의 섭취에 대한 부작용은 심장화상, 입내서의 금속맛, 구토, 위장장애, 변비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음
- ●30분이나 3-4시간 동안 지속적인 노출은 심한 독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
- ●심한무기력, 위장복통, 구역질, 심한설사, 그리고 구토를 일으킬 수 있음
- ●구토물은 피를 포함할 수도 있음
- ●탈수열이 심할 수 있음
- ●순환기는 쇼크, 창백, 청색증, 오한 증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, 호흡, 심한 저혈압으로 호흡곤란을 겸한 폐쇠약, 부분 무기폐와 종양을 일으킬 수 있음
- ●다른 증상은 혈액농축, 빈맥, 기면, 졸음, 정신적인 혼란, 저혈압,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음
- ●만약 독성이 치명적이면 24-48시간내에 청색증, 경련, 순환기장애, 황달을 가진 간의 파손, 혈액의 심한 거세작용, 허탈, 심한 심장장애, 혈과의 산재, 폐부종과 폐출혈, 산주무뇨증, 과유두증, 혼수생태와 사망의 증상에 따라 24시간 동안 환자는 무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
- ●사망은 항상 쇼크에 뒤이어 나타남.

- -용기를 단단히 밀봉할 것
- -식료품과 분리시킬 것
- 다.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:
- -US DOT 선적 명칭 및 ID 번호 (49CFR172.10):
- -US DOT 위험 등급 분류 (49CFR172.101):
- -US DOT 포장 그룹: 없음
- -US DOT 표시기준 (49CFR172.101):
- -US DOT 포장기준 (49CFR172.119):
- ●예외:
- ●소량포장:
- ●대량포장:
- -US DOT 제한량 (49CFR172.101):
- ●승객용 항공기 또는 열차:
- ●화물 전용 항공기:

#### 15. 법적 규제현황

- 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: "8.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"중 "노출기준"참고
- 나.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타부처의 화학물질관리 관리법에 의한 규제:
- -유해화학물질관리법: 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음
- -수질환경보전법
- ●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해당안됨
- ●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에 해당안됨
- ●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안됨
- -대기환경보전법
- ●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해당안됨
- ●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에 해당안됨
- ●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안됨
- 다.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: 자료없음

## 16. 기타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:

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, 노동부고시 제96-24 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,

비치등에 관한 기준) (별표2) 양식에 맞게 미국 MDL Information system Inc사의 영문 OHS MSDS, 일반문헌 등을 가공, 첨가하고 국내 관련 규제법규 현황 등을 추가하였음

- 나. 국내 관련 규제법규 현황은 본 제품의 용도나 알려진 성분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국내 관련 법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
- 다. 본 MSDS를 사전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재판매, 한글이외의 제 3국어 번역은 저작권에 관련된 국내외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람.

#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(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)

2001. 1.

TMC Co., Ltd.
Titanium, Mineral & Chemicals